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.

발 의 자 : 김선민 · 신장식 · 강경숙
정춘생 · 이해민 · 김준형
서왕진 · 김재원 · 최혁진
황운하 · 전진숙 · 김남희
한창민 · 차규근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그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훈련시설은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

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4항).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4항 중 “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<u>제22조의</u> <u>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</u> <u>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「장애</u> <u>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</u> <u>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</u> 도 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 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다음 각</u> 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</u> <u>설에</u> ----- ----- -----. 1. <u>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</u> <u>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</u> 2. <u>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</u> <u>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</u> 3. <u>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</u> <u>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</u> <u>시설 중 직업재활시설</u> ⑤ ~ ⑪ (현행과 같음)
⑤ ~ ⑪ (생 략)	